##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재정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297

발의연월일: 2020. 8. 26.

발의자:이재정・오영환・이수전비

기동민 · 이형석 · 장경태

김경협 • 이탄희 • 김영호

김민기 · 김원이 · 도종환

의원(12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통 중인 소방용품의 수집검사 결과 중대한 결함이 있는 소방용품에 대해서 소방청장이 회수·교환·폐기 또는 판매중지를 명하 고, 형식승인 또는 성능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미 판매된 소방용품에 대해서는 회수 또는 교환 등의 조치를 하도록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화재안전 관리에 허점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소방용품의 검사 결과 회수·교환·폐기 또는 판매중지를 명하거나 형식승인 또는 성능인증을 취소한 때에는 소방청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도록 하고, 해당 소방용품이 이미 판매되어 사용 중인 경우에도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안 제40조의3제3항 신설).

법률 제 호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의3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공표할 수 있다"를 "공표하여야 한다"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소방용품의 회수·교환·폐기 또는 판매중지 명령을 받은 제조자 및 수입자는 해당 소방용품이 이미 판매되어 사용 중인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매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회수 또는 교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8조의2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제40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구매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아니한 자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방용품의 수집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수집검

사가 진행 중인 소방용품에 대해서는 제40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에 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0조의3(소방용품의 수집검사	제40조의3(소방용품의 수집검사
등) ①・② (생 략)	등) ①・②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③ 제2항에 따라 소방용품의
	<u>회수·교환·폐기 또는 판매중지</u>
	명령을 받은 제조자 및 수입자
	는 해당 소방용품이 이미 판매
	되어 사용 중인 경우 행정안전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
	매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회
	수 또는 교환 등의 필요한 조
	치를 하여야 한다.
③ 소방청장은 제2항에 따라	<u>4</u>
회수·교환·폐기 또는 판매중지	
를 명하거나 형식승인 또는 성	
능인증을 취소한 때에는 행정	
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그 사실을 소방청 홈페이지	
등에 <u>공표할 수 있다</u> .	<u>공</u> 표하여야 한다.
제48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	제48조의2(벌칙)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	
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u>6</u> 의2. 제40조의3제3항을 위반하
	여 구매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조
	<u>치를 아니한 자</u>
7. (생 략)	7. (현행과 같음)